

## 2. 상담 및 사건처리절차 안내

### (1)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고 함)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 권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된 교내 구성원 또는 신고접수 없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인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합니다.
	근거 :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13조와 제15조
조사방법	신고접수 및 직권으로 개시된 조사를 위해 사건당사자 또는 사건관련자(기관 등)에게 출석진술 요구, 진술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및 현장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진술서를 요구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 제4조

### (2) 사건처리 절차 등



#### ① 신고접수 또는 직권조사 개시 결정

피해자나 대리인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 규정 제13조).

신고 외 다른 경로로 침해 행위를 인지한 경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처리할 수 있습니다(위 규정 제15조).

#### ② 당사자에게 신고접수 또는 직권조사 결정 안내

신고접수 또는 직권조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사건당사자(피해자, 피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 ③ 사건관련자에 대한 조사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전문상담사 또는 (상임·특별·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통해 진술을 청취하고, 서면진술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며(위 규정 제14조), 조사 시 그 내용을 기록·녹음·녹화할 수 있습니다(위 시행세칙 제14조).

### ④ 위원회 구성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접수사건의 사실관계 및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당사자들을 만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에서 파악된 내용과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 및 취합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면밀히 살핍니다. 이후 혐의인정 여부, 필요한 조치 또는 피신고인 징계요구 등 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전원을 같은 성별로 구성하지 않습니다(위 규정 제9조와 제10조).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사건당사자들과 같은 학과 및 부서 소속일 때,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이외에도 사건의 조사 및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조사위원 스스로 회피 하거나, 사건당사자가 특정 조사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할 수 있습니다(위 규정 제16조).

### ⑤ 위원회 소집 및 출석

센터는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센터는 필요에 따라 참고인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사전에 통보한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소집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진행 시, 기록은 물론 녹취와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위 규정 시행세칙 제8조).

### ⑥ 위원회 심의·의결

### ⑦ 의결사항 통지

센터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기각, 의견표명, 조치 결정, 징계 발의 등)을 사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위 규정 제18조).

### (3) 권리구제조치

- 조정(합의권고)

센터장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위 규정 제19조).

- 조치

센터장은 권리침해가 확인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피신고인 또는 그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규정이 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위 규정 제20조).

- 징계요구

센터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의 행위자로 판단된 당사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위 규정 제22조).

### (4) 피해자의 권리

대리인/동반인 선임 및 동반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뢰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동반하거나 조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에 출석 시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진술권	피해 사실과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및 징계요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거부권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요구	조사 및 처리절차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신분 및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5) 피신고인의 권리

대리인/동반인 선임 및 동반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뢰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동반하거나 조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 출석 시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진술권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요구	조사 및 처리절차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특정인을 배제하도록 필요한 조치(기피신청)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센터에 신고되었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신분 및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3. FAQ

#### 1 인권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무엇인가요?

##### ■ 인권 침해란?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일

##### ■ 대학 내 인권 침해유형

- 출신 국가, 인종, 장애,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의견표명, 선거권, 징계 등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위계관계 속에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강요하는 행위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란?

-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및 성별 등을 사유로 하는 괴롭힘과 차별

##### ■ 대학 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유형

- 강의실, 실험실, 연구실 등에서 성추행, 성적인 모욕을 주는 말이나 행동
- 행사(MT, 신입생 환영회, 축제 등)와 동아리 등의 활동공간에서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성적 모욕을 주는 말이나 행동
- 데이트 중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행
- 단톡방, SNS 등 디지털 공간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성적 모욕을 주는 말이나 행동

#### 2 2차 피해란 무엇인가요?

##### ■ 2차 피해

사건으로 인해 피해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변인이나 가해행위자가 말이나 소문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것

#### 3 인권·성평등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과 괴롭힘을 포함한 인권침해 관련 피해상담
- 권리 침해 피해 신고 접수 및 사건처리
- 행위자 재발 방지 교육상담
- 침해와 차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관련 고민상담

- 기본권리 침해 구제에 관한 정보 제공
- 인권, 성평등, Gender Issue 관련 자료 제공
- 다양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교육
- 온라인 ‘인권과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관리
- 교내 인권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

#### 4 누가 상담받을 수 있나요?

- 학생, 교수(강사), 직원 등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신고의 경우 피해당사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5 상담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전화, 이메일,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시, 전화·이메일로 미리 약속을 잡고 찾아주세요.

#### 6 사건이 접수되면 내가 속한 학과/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나요?

-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예, 분리조치) 등을 위해 학과/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비밀보장 전제하에 사건처리 중임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학과/부서에 당해 사건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 7 사건 접수 후 내가 제출한 자료가 상대방에게 전해지나요?

-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수집하는 자료는 상대방에게 제공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규정 제27조(비밀유지의무)에 의거하여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자료 또한 열람할 수 없습니다.

#### 8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의 진행단계가 궁금해요.

- 사건당사자의 경우, 센터에 문의하시면 사안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당사자 이외의 관련자 및 제3자에게는 규정 제27조(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9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은 언제 마무리되나요?

- 규정에 정해진 최종 조사 및 심의까지의 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단,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상대방을 만나 사과할 수 있나요?

-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센터는 이를 최우선 원칙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이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면 또는 연락을 취하려고 하거나, 원하지 않는 화해를 시도하거나 근황을 수소문하는 행동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2차 가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피신 고인이 2차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규정에 의해 가중징계 될 수 있으며, 주변인이 신고인에게 피신고인 만남 주선, 합의 중용, 회유, 신고철회 압박 및 소문 유포 행위 등을 하여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 이는 규정위반 행위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규정 제23조, 제2조 제6호)